



NEVADA SECRETARY OF STATE

네바다주 투표권 회복 (Restoration of Voter Rights in Nevada)

중범죄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투표권 회복에 관한 법률이 최근 변경되었습니다. 새 법률에 대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요

2019 년 7 월 1 일, 2019 의회법안 431 이 입법회기에 통과되었습니다. 이 새 법률에 따라 네바다 주민으로서 중범죄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사람은 교도소에서 퇴소함과 동시에 투표권이 회복됩니다. 대기기간이 없고 본인이 어떤 조치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투표권 회복은 중범죄의 종류나 범죄인이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 상황이더라도 상관없이 교도소 퇴소 즉시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투표권이 회복된 사람은 다음의 사항을 충족시킬 경우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네바다 주에서 유권자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 미국 시민권자이어야 합니다;
- 다음 선거일 현재 최소 18 세가 되어야 합니다 (투표 예비등록의 경우는 17 세);
- 다음 선거일 30 일 전까지 지속해서 네바다 주와 카운티에 거주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 다음 선거일 10 일 전까지 해당 선거구에 거주했어야 합니다.

중범죄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복역중인 사람은 유권자등록을 할 수 없으며,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한 어떤 투표절차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유권자등록 취소 후 재등록

중범죄 판결로 인해 유권자등록이 취소되었던 사람은 교도소에서 퇴소하면서 유권자등록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재등록을 위해 투표권이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증빙서류를 포함해 일체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타주 또는 연방법원에서 중범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2019 년 7 월 1 일 발효된 네바다 주 의회법 431 에 의거, 네바다 주민은 교도소에서 퇴소하는 즉시 자동적으로 투표권이 회복됩니다. 타주에서 또는 연방법원에서 중범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투표권 자동 회복은 본인이 교도소에서 퇴소함으로써 모든 경우에 적용됩니다.



NEVADA SECRETARY OF STATE

중범죄 전과자 자격 유무

네바다 주민으로:

1. 2019 년 7 월 1 일 이전에 집행유예나 가석방으로 풀려난 사람;
2. 2019 년 7 월 1 일부로 징역형으로 수감되어 있지 않은 사람; 그리고
3. 아직 본인의 투표권이 회복되어 있지 않은 사람

위의 사람들은 2019 년 7 월 1 일부로 투표권이 회복됩니다. 이들은 현재 가능한 모든 유권자등록 방식을 통해 유권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등록 방법

네바다 주의 다양하고 편리한 유권자등록 방법에 대해서는 주무장관의 [Registering to Vote](#) 웹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